

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 규정 등 개정 주요내용

이 자료는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한 “기업상장 활성화를
위한 규제 합리화 추진”을 수록한 내용입니다.

자세한 내용은 한국거래소 웹사이트(www.krx.co.kr)
보도자료 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1.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

1 진입요건 중 주식 분산요건 완화

- (현행) 주식 분산을 통한 유동성 확보 및 증권신고서 제출로
기업정보 제공을 위해 일반주주* 수(1,000명) 및 의무공모**
규정

* 최대주주(특수관계인 포함)와 주요주주(10%이상 소유주주)를 제외한
주주

** 예비심사 후 공모주식수가 발행주식의 5% 이상

- 해외 주요거래소 기준* 등을 감안시, 비교적 엄격한 수준

* (주주수) (日) 800, (싱가폴) 500, (美) 400(100주 이상 보유주주),
(홍콩) 300, (英) 없음
(의무공모) 주요국 중 강제하는 국가 없음

- (개선) 일반주주수 요건을 현행의 1,000명에서 700명*으로
완화하고, 의무공모 폐지

* 해외 주요거래소 기준 및 코스닥시장 요건(500명) 등을 감안

2 우량기업 상장심사 간소화(Fast Track)

- (현행) 기업 규모 · 경영실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대해서
확일적으로 동일한 상장요건 · 절차를 적용

- (개선) 규모와 경영실적이 일정 수준 이상인 우량기업에 대해서
는 ‘기업 계속성’ 심사를 면제하는 한편, 상장심사 기간을 대폭
단축 (45영업일 → 20영업일 이내)

[우량기업 요건(모두 충족)]

자기자본	매출액	이익액
4천억 이상	최근 7천억 & 3년평균 5천억 이상	최근 300억 & 3년합계 600억 이상 (매 사업연도 이익실현)



3 최대주주등에 대한 지분매각 제한 완화

- (현행) 상장직후 대량물량 출회 방지 및 최대주주 등의 차익 실현 제한으로 책임경영 구축을 위해 지분매각 제한(보호예수)
 -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상황에 따른 탄력적 적용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기업의 상장부담 가중

- (개선) 보유목적, 주주간 관계 등을 고려 시 제외가 불가피한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대상에서 제외

* (예시) 특수관계인 소유지분이 5% 이하로서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나 최대주주와 적대관계에 있는 경우 등

- 단기간내 회생가능한 기업의 경우에도 획일적 상장 폐지

* 해외 주요거래소의 경우 대부분 상장폐지 요건 해당시 유예기간 (6~18개월) 부여

- (개선) 단기간내 정상화가 가능한 상장폐지 대상 기업에 대해 개선기간을 부여하여 정상화를 유도

- 이의신청을 통해 개선기간을 부여 받을 수 있는 항목을 확대* 하고 이의신청 제기 기간도 연장(폐지통보 7일내 → 15일내)
 - 추가로 최종부도 · 은행거래정지, 거래량 · 지분분산 · 사외이사/ 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, 주식양도제한, 우회상장기준 위반 사유에 대해 이의신청 허용 → 최대 1년간 개선기간 부여(거래는 정지)

-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과정에서 상장법인에 개선기간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이내에서 개선기간 부여

4 부동산투자회사(리츠) 상장요건 완화

- (현행) 부동산투자회사(Reits)에 대해 엄격한 상장요건을 적용함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상장이 크게 제한

- 공모 이전에 부동산 취득을 완료*할 것을 요구하여 상장이 사실상 제한

* 상장예비심사 신청시 총자산의 70%이상을 실물부동산으로 보유

- (개선) 부동산투자회사 진입요건 중 자산구성요건 완화
 - (간주부동산 인정) 총자산의 20%까지 간주부동산*을 인정해 실물부동산 비율을 총자산의 50%까지 완화

* 사모 · 공모자금, 부동산매각대금, 다른 리츠 주식, 지상권 · 전세권 등

- (부동산 취득여부 심사시기) 현행 예비심사 신청일에서 상장 신청일로 변경

5 상장폐지 대상기업에 경영 정상화 기회 부여

- (현행) 상장기업이 형식적 상장폐지 기준*에 해당하는 경우, 이의신청이 가능한 일부 경우**를 제외하고 즉시 상장폐지

* (경영상황) 매출액, 자본잠식, 주가, 시가총액, 거래량, 지분분산 요건 미충족(법률 · 회계) 사외이사/감사위원회 미충족, 회생, 파산, 부도, 감사 의견 부정적(공시) 불성실공시, 정기보고서 미제출

** 감사의견, 주가, 시가총액 관련 사유의 경우에만 이의신청이 가능

6 회생법인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합리화

- (현행)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매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실시함에 따라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

- (개선) 회생중인 기업에 대한 정기적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폐지

- 회생절차는 법원의 관리에 따라 진행되므로,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 고려

7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출자전환시 보호예수 의무 개선

- (현행) 제3자배정에 의한 신주발행으로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변경시 제3자배정에 참여한 모든 참여자에 보호예수 의무 부과
 - 구조조정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 채권의 출자전환을 추진한 경우 출자전환으로 보유한 주식의 매각까지 제한하는 것은 채권자에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

- (개선) 출자전환에 따른 제3자 배정 신주발행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 후 최대주주등에만 주식매각을 제한

8 합병시 상장제한 요건 완화

- (현행) 상장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다른 비상장법인과 합병, 영업양수 등을 한 경우, 당해 연도 결산확정 이전까지 일률적으로 상장신청 제한*

* (예시) '12년중 지정감사인 지정 등 상장준비 → '13.1월 합병 → '14. 3월 이후 상장신청 가능

- (개선) 해당연도 결산확정 이전이라도 합병 등의 중요성·영향 등을 감안, 사안별로 상장심사신청 허용(☞ 질적심사 대체)

* 기업재무구조변경을 반영한 회계법인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재무 건전성 심사

9 건설업에 대한 차별적 상장요건 폐지

- (현행) 부실건설사의 증시 진입 차단을 위해 건설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장요건(건설업 영위 10년, 시공능력평가액 500억)을 적용
 - 우량 건설사의 증시 자금조달을 차단하는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

- (개선) 건설사에 대한 추가적인 형식적 상장요건을 폐지

10 관리종목지정 제도 개선

- (현행) 관리종목지정 사유 중 파산신청은 소액채권자의 악의적인 파산신청 등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관리종목 지정
- (개선) 투자자의 거래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파산신청 관련 관리종목지정 예외근거* 마련
(☞ 회사의 재무상태나 채권 금액 등을 고려)

2. M&A활성화 방안 및 NCR 제도 개편

1 PEF가 최대주주인 회사에 대한 상장요건 개선

- (현행) PEF가 최대주주인 법인의 신규상장시 경영안정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해 엄격한 기준 적용
 - 최대주주 보호예수기간 확대(6개월→1년), 2대주주 보호예수 의무 부과 및 지분매각시 2대주주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등
- (개선)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에 대해 보호예수 의무를 강화 하되 원칙적으로 일반기업 상장요건과 동일하게 적용
 - PEF가 최대주주인 경우 보호예수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, 경영안정성 확보시 보호예수 의무 완화*

* 최대주주 변경시 보호예수 주식의 인출을 허용하되 신규 최대주주 등에 대해 보호예수(6개월) 의무 부과

2 SPAC 상장요건 완화

- (현행) SPAC 신규상장시 최소 자기자본이 200억 이상으로 제한 되어 합병대상 선정이 곤란하여 SPAC 설립이 활성화 되지 못함
- (개선)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200억에서 100억으로 완화
 - 다만, SPAC 합병상장시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 요건 (200억)을 신설해 신규상장 요건(300억) 미달 기업의 시장 진입 방지

3 ELW 및 합성ETF NCR 요건 조정

- (현행) ELW 및 합성ETF 모두 상장기준은 NCR 250%, 상장 폐지기준은 NCR 200%를 적용
- (개선) NCR 규제체계 개편에 따라 ELW 및 합성ETF 상장·상장폐지 기준을 각각 50%p씩 인하

- (현행) 상장 : 250% 이상, 상장폐지 : 200% 미달
(변경) 상장 : 200% 이상, 상장폐지 : 경영개선권고 기준* 미달시

* 현행 NCR기준 150%, 개정('15년) NCR기준 100% 예정

3. 기타 상장제도 개선사항

1 상장주선인 선임의무 명확화

- (현행) 우회상장과 리츠 신규상장에만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나, 실무상으로는 신규상장 · 재상장시 상장주선인을 모두 선임하고 있어 상장규정과 실무간에 불일치 존재
 - 특히 상장주선인의 기업실사(Due-Diligence)를 통해 부실기업의 시장진입을 차단하는 상장정책과도 부합하지 않음
- (개선) 보통주권 · 외국주권의 신규상장, 우회상장, 재상장에 상장주선인 선임의무 규정

2 1인주주 회사 즉시 상장폐지

- (현행) 최대주주등이 발행주식을 전부 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1인주주 회사인 경우에도 상장폐지 근거 부재
- (개선) 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이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는 경우 즉시 상장폐지

3 종류주권 신규상장시 매각제한 개선

- (현행) 회사분할 ·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의 종류주권 상장시에 보호예수의무 부과는 과도한 규제
 - * 보통주권은 재상장 절차가 있어 보호예수 의무가 부과되지 않음
- (개선) 분할 · 합병 재상장에 따른 종류주권의 신규상장시 보통주권과 동일하게 보호예수 의무 면제

4 ETF 관리종목 지정사유 중 규모요건 개선

- (현행) 반기말 기준 신탁원본액 50억원 미만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, 6개월내 동일 사유 미해소 시 상장폐지
 - 실질가치인 순자산총액이 50억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환매로 인해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됨
- (개선) 관리종목지정사유 중 규모요건에 순자산총액 요건 추가

